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문화정책과)

제출일 : 2024. 3.

1.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제19409호, 2024. 5. 17.시행)으로 국가유산체제를 준용하여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개정안 제명)
- 조례 본문의 기존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개정
- 타 조례의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일부 개정(개정안 부칙 제3조 ①~⑫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한종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